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5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산업용지의 환수,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기준을 완화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의 매입비, 조성사업의 공사비 등을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한 규정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변경(안 제6조)

나. 원칙적으로 처분(양도) 및 임대(대여)를 제한한 산업용지를 처분 방법 및 조건을 정하여 임의처분을 제한하도록 변경(안 제22조제1항)

다.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지의 환수규정을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로 한정(안 제23조)

라. 일체의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관리토록 한 규정을 지자체가 유지관리해야 하는 시설은 제외(안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5. 8. 11. ~ 8. 31.)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분석 : 원안동의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산업용지를 분양 받은 자는 분양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산업용지의 환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용지의 환수 및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공동시설인 도로·폐수처리장·상하수도시설·유수지 시설 등을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로, 이 경우는 입주업체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동이용 시설을 위탁관리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사업시행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2조(양도와 대여금지) ① 분양을 받은 자는 이를 분양목적 이외의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22조(양도와 대여금지) ① 산업용지를 분양 받은 자는 분양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환매권의 유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 계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부쳐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건립을 지연시키는 경우 3. 공장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3조(산업용지의 환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용지의 환수 및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군수는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 등 일체의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군수는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공동시설인 도로・폐수처리장・상하수도시설・유수지 시설 등을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그밖에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로, 이 경우는 입주업체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군수는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공동시설 유지보수비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비 부담에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이용 시설을 위탁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